

## 안세회계법인 · 829-7575 세계재경저널 *AnSwer*

eAnSe.com • • • 2022/2/21

전직원 회람 공지 MEMO+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·計·經營 戰略

##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과 건설용역의 부가가치네 면제 적용

개념, 구분	범위, 내용, 계산방법, 근거규정 등	관련 세법
국민주택규모	주거전용면적이 1호(1세대)당 85㎡이하(비수도권은 100㎡ 이하)인 주택	주택법 제2조
부가세 면제 범위	국민주택의 분양, 양도, 최초분양 후의 계속거래 등 + 국민주택건설용역 +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	조특법 제106조 제4호
부가세 면제 이유	서민 대중의 국민주택거래 가격에서 부가세 10% 부담을 낮 춤	부가세 면세 제도
면제되는 건설용역	건설사업, 전기공사업, 소방시설공사, 정보통신공사, 주택법·하수도법 상 등록자의 국민주택 공급 + 관련 설계용역	조특법 시행령 제106조의 제4항
직접건설분양	국민주택을 직접 건설하여 분양·판매하는 금액	조특법 제106조 제4호
1차 원청사	국민주택건설사(토지주택공사, 일반 건설사 등)로부터 하도 급 받은 경우	조특법 기본통칙 106-106-2
2차 하도급	국민주택건설 하도급사에게서 부분건설 등 재하도급 받은 경 우	
재하도급 등 (열거된 업종 기준)	국민주택의 건설, 전기, 소방시설, 정보통신공사, 하수도, 국민주택 관련 설계용역	열거주의
단순납품은 과세	상기 열거된 국민주택건설 업종만 면세, 국민주택건설에 소 요되는 각종 자재ㆍ부품의 단순납품은 과세됨	열거안됨